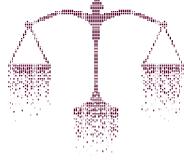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동성애독재의 법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동성애독재의 법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

Contents

1.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의 삭제 당위성

- 1** 인권위법 제정 당시 법의 실체를 숨김 1
- 2**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 법조항임 3
 - 1) 외국의 차별금지법에 의한 동성애 반대자 처벌 사례
 - 2) 한국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탄압 사례
 - ①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조장 사례
 - ② 국내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로 인한 탄압 사례
- 3** 대법원 및 헌재 결정을 위반하는 인권위의 하극상 11
- 4** 동성애반대자 처벌을 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12
- 5**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초래하는 해악들 12
- 결론** :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13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2.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 | | |
|----------------------------------|----|
| 1 동성애자들을 차별해도 좋다는 뜻인가? | 15 |
| 2 혐오는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 | 20 |
| 3 유엔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 | 22 |
| 4 평등과 차별금지 헌법적 기본권이다? | 36 |
| 5 성적지향 삭제가 성소수자 인권을 빼앗는다? | 27 |
| 6 그 밖의 주장에 대한 반론 | 28 |
| 추가 : 성별을 남녀로 한정하면 성소수자 배제? | 30 |



1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의 삭제 당위성

2019년 11월 21일(목)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여러 당적의 44명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으며, 각계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이 글에서 삭제 개정안의 당위성을 간략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1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당시, 동성애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의 실체를 숨기고 국회와 국민을 속였음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2001년 인권위법을 제정할 때부터 도입되었다. 그런데, 인권위법에 도입될 때에 성적지향의 의미를 숨기기 위하여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법적 개념 정의도 없이 도입되었고, 2001년 제정 시에는 성적지향을 숨기려고 제30조에 넣었다가 2005년에 제2조로 옮겼다. 주목 받으면 반대가 예상될 수 있어서 최대한 주목을 피하기 위해 숨겨 놓은 것처럼 보인다. 2001년 제정 시에, 성적 지향이 무슨 의미인지, 그 개념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인지조차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대다수 국민들이 전혀 몰랐다.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 때 찬성한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당시 법안 심의록을 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언급만 있을 뿐이다.¹⁾ 그런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는, 이 문구가 없어도 노동법, 민법 등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방지된다. 국회의원들은 반대 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이라는 실체를 모른 채 찬성했던 것이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에, 대부분 국민들과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생소한 '성적지향'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삽입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을 설명하지 않는 묵시적 기망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국회 및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전격 제정된 것으로서, 국회나 주권자인 국민들을 사실상 기망하는 방법으로 제정된 절차적 중대 하자를 가진다.

1) 제219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제2호, 29페이지.

2 “성적지향 차별금지”는 동성애 반대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 법조항임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핵심문구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이다. 차별금지법은 이 문구 위반자에 대하여 민사,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이다. 이 문구를 포함하는 인권위법은 실질적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는 성적지향의 대표적인 유형인 동성애자도 인간으로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포장하고 있다. 이러한 포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구의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보면 동성애를 윤리, 신앙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금지법 위반자들로 몰아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1) 외국에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에 의한 동성애 반대자 처벌 사례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나라들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를 말, 글 또는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사용되어 왔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2013년 영국에서 거리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설교를 한 목사 토니 미아노가 체포 구금되어 조사 받은 것도 공공질서법 내의 이 문구이다. 2003년 스웨덴에서 교회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설교한 아케 그린 목사에

게 징역형을 선고한 근거, 미국 애틀랜타 소방국장은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부하 직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례,²⁾ 영국 상담사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성관계 상담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양심적 거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가 해고된 사례,³⁾ 동성애 중단을 돕는 상담을 해준 정신과 의사들의 자격을 박탈한 사례, 영국의 입양기관이 동성커플에게로의 입양을 거절하자 영구 폐쇄되는 조치를 당한 사례,⁴⁾ 교사가 직원훈련의 날이 동성애자 권리를 고취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불만을 다른 직원에게 했다고 정직 당한 사례,⁵⁾ 영국 의사가 동성애와 소아성애의 상관관계에 대한 글을 적었다는 이유로 내무부 자문위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⁶⁾ 영국 체스터 주교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로 전환된 사례를 보여주는 연구가 실린 지역신문을 언급해서 경찰지구대 조사를 받은 사례,⁷⁾ 2013년에 “동성애는 성윤리에 반한다.”는 말을 거리 설교에서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⁸⁾ 2010년에 경찰관의 질문에 동성애 성행위는 죄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⁹⁾ 70세 거리 설교자가 동성애를 중지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다수가 와서 폭행을 가했지만 경찰이 폭행한 사람 대신 거리 설교자를 체포했으며, 영국 법원은 그에게 수백 파운드의 벌금형을 내린 사례,¹⁰⁾¹¹⁾ 영국 과학교사는 11살 학생 질문에 동성애 행

2)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26553

3) Christian Concern, 『Current Issues: Gospel freedom, Christian faith and its place in public life』, 2016, 8면.

4)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8면.

5)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1면.

6)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2면.

7)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4면.

8)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6면.

9)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7면.

10)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18면.

11) The Christian Institute, 2006년 7월 7일, <https://bit.ly/2DwyrZt>

위는 죄라고 말했다가 해임되고 다른 학교에서도 수업할 수 없도록 무기한 금지 명령까지 받은 사례,¹²⁾ 캐나다 대법원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중오 범죄라고 판결하고, 손해 배상과 수십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 사례,¹³⁾ 동성애를 금지하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학칙을 제정한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캐나다 대법원에 의해 로스쿨 설립 인가를 취소당한 사례,¹⁴⁾ 미국 뉴멕시코 인권위가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기념 촬영을 거부한 사진사에게 약 6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¹⁵⁾ 미국 뉴욕주 법원은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를 거부한 농장주에게 1만3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¹⁶⁾ 미국 오리건 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부부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후, 13만5천 달러 벌금형과 135만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사례,¹⁷⁾ 미국 콜로라도주 법원이 동성결혼 케이크 제작 거절했을 때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유죄판결한 사례,¹⁸⁾ 미국 일리노이에서 두 남성간 결혼식 행사 수용을 거부한 호텔에 8만 달러 벌금이 부과된 사례,¹⁹⁾ 미국 워싱턴주 최고법원에서 두 남성간 결혼식 꽃다발 제작을 거부한 화환 제작자에게 벌금형 판결 사례,²⁰⁾ 영국의 호텔이 동성애자 숙박 거부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사례²¹⁾ 모두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위반 적용 사례들이다.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에,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지만, 만약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똑같은 일이 생길 것이다.

2) 국내에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조항 도입 후, 동성애 옹호 조장 및 반대 탄압 사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례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해외 각

국 사례들과 완전히 동일하다. 인권위는 그동안 국민 세금으로 동성성행위를 옹호 및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당한 반대활동을 금지하고 위축시키는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①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조장 사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활동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02년 국어사전 등 각종 사전에서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해석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권고해 사전에서 반대 견해가 사라졌다.²²⁾ 2003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삭제되었다.²³⁾²⁴⁾ 그 결과 온라인에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소설 등이 범람하여 청소년들이 보게 만들었다.

또한 인권위가 기획한 인권만화집에 동성애 옹호 내용이 포함했고,²⁵⁾

12) Christian Concern, 앞의 책, 20면.

13) Christian News, 2013년 2월 28일, <https://bit.ly/2DtH2fy>

14) 캐나다 대법원 판결문, 2018년 6월 15일, <https://bit.ly/37UmgDF>

15)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8135>.

16)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

17) 기독교보, 2015년 7월 7일, <https://bit.ly/33y3DSE>

18) 기독교보, 2015년 8월 18일, <https://bit.ly/2r0uqK7>

19) 갯둑, 2016년 4월 2일, <http://www.godntalk.com/best/27078>

20) 중앙일보 Korea Daily, 2017년 2월 16일, <https://bit.ly/33B0X6z>

21)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4>

2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2.11.15.자 <https://goo.gl/unE5Bo>

23)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2004. 4. 24. 개정 이전의 법)

2. 개별 심의기준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 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24) 오마이뉴스, 2003년 4월 30일, <https://bit.ly/2OHeu8N>

인권위 지원으로 동성애 옹호 영화 <다섯 개의 시선> 제작했고,²⁶⁾ 동성애를 포함하는 2번째 기획만화를 출판하고, 청소년 동성애 내용을 담은 인권영화 <세번째 시선> 제작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개최했으며,²⁷⁾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 ‘별별 이야기2’를 제작·개봉했다.²⁸⁾ 이처럼 인권위는 청소년용 동성애 옹호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 지원하였고, 동성애를 포함한 인권영화를 전국 170여개 초·중·고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상영하도록 하였다.²⁹⁾

2005년 인권위 지원으로 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어 서울지역 1500개 학교에 배포했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도 자료집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발간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 바로알기 인권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노력(?)에 의해서 20년 전에는 동성애에 모르거나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10대~20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제는 50% 이상 동성애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인권위가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시킨 결과이다.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는 2003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의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를 지원했고,³⁰⁾ 2004년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가 주최한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를 지원했다.³¹⁾ 2006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주최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행사가 인권위 인권단체협력사업 중 하나로 기획되었다.³²⁾ 2006년부터 군부대 내에서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동성애를 비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제시해 금지시켰고,³³⁾ 동일한 취지의 교과서들이 저술되도록 하여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옹호교육만 허락하고 반대 교육을 금지시켰다.

인권위는 2010년 향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균형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³⁴⁾ 2017년,³⁵⁾ 2018년 서울,³⁶⁾ 2018년 광주 및 대구의³⁷⁾ 동성애 쿼어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2011년 인권위와 기자회견이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보도와 에이즈 등 유해한 병리현상과의 연관보도를 금지시켰다.³⁸⁾ 이로 인해 대부분의 언론에서 동성애 지지보도가 급증하였다.³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하도록 권고했고,⁴⁰⁾ 초·중·고 공무원 및 공공

25)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3.8.12.자. <https://goo.gl/bu3Xbj>

26) 조이뉴스24, 2005년 4월 12일, <https://bit.ly/2P5wXdN>

27)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6.11.30.자 <https://goo.gl/RThRm9>

28)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8.4.10.자 <https://goo.gl/fXorpu>

29)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3.12.3.자 <https://goo.gl/UYxj4>

30) 일다 2006.1.31.자 “행복한 레즈비언 되기’ 강좌 열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7&aid=0000001381>

31) 부산일보 2004.7.12.자 “제2회 부산 무지개영화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006978>

32) 일다, 2006.5.24.자 “동성간 ‘가족’ 구성권을 인정하라”

33)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06.6.28. <https://goo.gl/8Xb1VQ>

34) 국가인권위원회, “균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2008헌기21)에 대한 의견 제출”, 2010. 12. 8.자 결정문.

35) 한겨레신문 2017.6.15. <https://bit.ly/2P1Qko7>

36) 한국일보 2018.7.14. <https://bit.ly/2LjvRLI>

37) 허프포스트코리아(huffpost), 2018.6.21., <https://bit.ly/34FpyZw>

38) 국가인권위·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2011.9.13. 39) 오마이뉴스, 2003년 4월 30일, <https://bit.ly/2O-Heu8N>

39) 교회언론회가 방송 및 일간지들을 4년 7개월 동안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언론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지지보도가 급상승함(크리스천투데이, 2014. 8. 14.자 기사).

40) 국가인권위원회 2012.4.12.자 결정문. <https://goo.gl/yR5YTp>

기관 등에 동성애 의무교육을 하도록 하는 <인권교육지원법안> 제정 권고
41) 및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을 목적으로 <군인권보호법안> 제정 권고했
다.42)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혼인 조항에 있는 양성의 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했고,43) 초·
중·고등학교에 동성애 옹호 학칙을 제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규칙 운
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
했다.44) 2019년 인권위는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고, 정책적 검토가 필요
하다고 밝혔고,45) 제3의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46) 인권위가 이러한
동성애 옹호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몇몇하게 하는 이유는 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루 속히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② 국내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로 인한 탄압 사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채택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47) 동성애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48)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내용,49) 이
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50) 등을 모두 성적지향 차별사례로 보고 있다.
2014년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51)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 동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치
료할 수 있다.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어렸을 때의 나쁜 경험 때문
이다.” 등을 모두 혐오 표현의 예로 언급하였다.

인권위에서 발간한 ‘2016년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보고

서에서 동성애를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보아, 학교에서 성적 소수자의 전환치료가 가능하다는 강연을 한 사례, 미션스쿨에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라는 표현, 동성애에 대한 종교적 판단 및 의학적·사회적 비판 등을 모두 혐오표현으로 보고,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기술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술대회의 발제문과 토론문은 동성성행위를 도덕이나 신앙적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들을 모두 성적지향 차별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2018년 인권위는 동성애옹호 영화상영을 위한 장소 대관을 불허한 숭실대에 불허하지 말 것을 권고했고, 다자성애, 성매매, 동성애 옹호하는 불법집회를 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징계 철회를 권고했고, 기독교인을 직원 임용조건으로 규정한 숭실대 정관 규정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⁵²⁾

동성애의 보건적 피해 등을 교육한 중학교 교사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
- 41)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10.30.자 <https://goo.gl/bCSaZy>
 - 42)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12.11.자 <https://goo.gl/jDBHnU>
 - 43) 국가인권위원회 헌법개정안 2017.06.26.자 등록.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9&boardid=7601326&menuid=001004001001>
 - 44)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boardid=7602411>
 - 45) MBC, 2019년 2월 27일자, <http://naver.me/F6qvRB1f>
 - 46) 머니투데이, 2019년 3월 29일, <https://bit.ly/33CaFFL>
 - 47) 조여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005.
 - 48) 조여울, 앞의 보고서, 92면.
 - 49) 조여울, 앞의 보고서, 132면
 - 50) 조여울, 앞의 보고서, 79~81면.
 - 51) 장서연,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 2014.
 - 52)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11월 12일, <https://bit.ly/2GLsuuB>

문구를 포함한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사과 권고를 받는 사례까지 생겼고,⁵³⁾ 동성애를 중단하기를 원하는 의뢰인을 상담해주겠다는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당하는 일까지 생겼다.⁵⁴⁾ 이처럼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 교육 활동과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려는 상담 활동까지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3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인권위의 하극상 활동

우리나라 대법원은 1차례, 헌법재판소는 3차례 균형법상 금지하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판결과 결정을 내리면서 “동성성행위는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고” 반복해서 판단했다.⁵⁵⁾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인권위는 헌법상 최고 법원의 결정을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동성성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성적지향 차별금지” 위반으로 해석하고, 심지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인권위법을 위반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다. 위헌적인 월권적인 하극상 행위임이 명백한데, 이러한 월권적 행위의 근거가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이다.

1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4 동성애반대자에 대한 법적처벌을 강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지속 추진

인권위는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 위반자에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법무부 등에 권고했고, 2007년부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회를 통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2017년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 신설 및 혼인 조항에 있는 양성외의 평등을 평등으로 바꾸어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헌법 개정안 제안했지만,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과 법률 제정이 막히자 조례에 이 문구를 포함시키거나 인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발생하고 있다.

5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가 초래하고 있는 재앙과 같은 해악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에 의해 국내에서 18년간 초래된 보건적, 윤리적, 재정적 폐해들은 놀라울 정도이다. 동성애에 수반되는 질병들이 급증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90% 이상이며, 감염경로는 99%가 성행위이므로 남성 동성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감염경로인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다. 2000년도 이후 전 세계

53) 머니투데이, 2017년 5월 25일, <https://bit.ly/2DwPUkm>

54) 경향신문 2019년 2월 8일, <https://bit.ly/2Y4q8gZ>

55)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도2222, 헌법재판소 선고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35% 감소되는 추세와 달리, 인권위법 제정 이후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자는 6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00년에서 2013~2016년까지 15~19세 청소년 신규감염자는 2명에서 33명 내지 52명으로 18~26배가, 20~24세 청년 신규감염자는 15명에서 145~185명으로 무려 12배나 폭증했다. 이 문구로 인해 청소년, 청년 등의 동성성행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불결한 배설기관을 성행위로 이용함에 따라, 변실금, 항문의 파열, 출혈, 사마귀, 탈장 등과 간염, 이질 등 감염질환이 수반된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부도덕한 행위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 등으로 우울증, 정신병 유발이 높게 나타난다. 에이즈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가 재정의 부담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결론 : 헌법상의 기본적 자유권을 수호하기 위해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할 국민들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억압한다. 예로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학문의 자유, 동성애의 유해성을 알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그러므로 동성애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재로부터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위법의 성적지향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제정된 지 18년이나 흐른 지금, 국내외의 수많은 적용사례들을 통해,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실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과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독재적 전체주의법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는 동성

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성적지향 차별금지” 문구를 하루
속히 삭제해야 한다.

2

개정안을 반대하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

1 “동성애자들을 차별해도 좋다는 뜻인가?”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

법에 명시된 차별사유 중 성적 지향만을 삭제하자는 것은, 성적 지향이 다르면 차별해도 된다는 주장과 같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다. 혐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어 성소수자들을 사회에서 더 위축시킬 것이다.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뺀다는 건 사회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근거로 차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1) 성적지향 차별금지와 한국의 역사적 경험

이러한 주장의 전제는, 인권위법에서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것은 역사적 경험이나 사회적 현실상황에서 그러한 ‘차별이 실재하였다는 사실’과 이

15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러한 차별 사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는, 즉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장애 등은 이에 기인한 차별행위가 실제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현행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이 명시된 것이 과연 이러한 사실과 국민적 합의의 산물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에서,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사실이 과연 얼마나 존재해 왔는가?

현재 한국에서는 균형법을 제외하고, 동성애를 금지하거나 형사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다.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다. 동성애자라고 학교 입학에 거부당하지 않고, 대학 총학생회장을 하는 동성애자도 있고, 외식 사업으로 성공을 한 동성애자도 있다. 현행 한국 헌법과 법률은 동성애자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도 있다. 따라서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가 삭제되더라도, 현행 법률에 의해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⁵⁶⁾에 따르면, 인권위 설립 일인 2001년 11월 25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5년 여 동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접수된 진정사건은 81건이다. 이는 성별·임신·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제기된 전체 차별 진정사건 총 23,407건 중 0.3%에 불과하다. 그나마 44건은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됐고, 18건은 기각되었다. 정작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11건에 대해서도 모두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는 수사의회나 조정, 고발 및 징계권고 결정 등의 법적 의미 있는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반면에, 예컨대 종교기관 등에서 종교적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교사 수업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는 많다.

2) 성적지향 차별금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사실 성적 지향이 인권위법에 명시될 당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심지어 입법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점에서 애초부터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 아니었다. 즉 성적 지향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17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등과 같은 차별금지사유로 동등하게 명시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한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것이 사회가 성적 지향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근거로 차별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성적지향 삭제가 동성애 차별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 삭제가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이며, 선동이다. 성적지향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정의된 바는 없지만, 성적지향이 동성애와 같은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

성적지향이 '성적인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며, 성적인 '행위'라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56) 국가인권위원회, 2016년 12월말 기준 사건 처리 현황, 2017년 2월 2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4&menuid=001003004&pagesize=10&boardtypeid=20&boardid=617177>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 인권위법 제2조 제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 등을 이유로”라는 예시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에, 어떠한 사유이든지 고용·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교육이나 훈련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성적지향’의 의미와 ‘제3의 성’ 논란

차별금지 사유로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령 문구는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향한 지속적인 정서적 낭만적 성적 감정적 끌림’으로 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성적 지향은 자신이 이끌리는 이성, 동성, 혹은 복수의 성 또는 젠더를 나타낸다고 하며,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무성애 등이 있다고 한다.

성적지향이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더 나아가 ‘복수의 성’에 이끌리는 범성애를 포함한다면, 도대체 ‘복수의 성’이란 성이 몇 개나 된다는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고 한다.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이제 ① 트랜스젠더, ② 안드로진, ③ 뉴트로이스, ④ 에이젠더, ⑤ 바이젠더, ⑥ 트라이젠더, ⑦ 팬젠더, ⑧ 젠더

리스 등 30개가 넘는 ‘제3의 성’들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이렇듯, 성적지향은 제3의 성을 창설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2 “혐오는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

혐오가 자유일 수 있는가?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해야 한다는 궤변이다. 혐오할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 중 무엇을 먼저 보호하고,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1) 과연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을 ‘양심,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궤변인가?

국가별로 혐오 발언의 개념과 그 허용 여부가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혐오 발언 자체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과연 이뤄졌는가에 의문이 들고 있다. 예컨대 2019.10. 국가인권위가 제작한 『혐오표현 리포트』에서는,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강화하는 효과가 없다면 혐오표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수자에게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혐오표현으로 보지 않는다.(17면). 과연 이러한 개념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여하튼 관점에 따라 혐오발언이라고 판단되는 발언일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본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혐오’와 ‘동성애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구별하고 있다. 즉 동성애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는 자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매우 단정적이라고 본다.

혐오표현의 자유와 성소수자 권리의 우선순위는 추상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다.

2)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 사랑하고 혐오할 자유가 있음

혹자들은 “혐오할 자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선악, 미추,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개인의 존엄과 인격 주체성의 전제인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을 사랑할 자유와 반대로 싫은 것을 혐오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혐오할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발상이다.

환언하면,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반대로 악하고 추하고 그른 것에 대해 싫어하고 혐오할 자유가 있다.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고, 또한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3 유엔이 '성적 지향 차별금지'를 지지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95개의 유엔 회원국 중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전혀 없는 국가가 131개국(67%)이고, 한 분야에라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64개국(33%)이고,⁵⁷⁾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 국가는 35개국(18%)에 불과하다. 반면에,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가 72개국(37%)이다.⁵⁸⁾ 참고로, 동성애 처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모두 있는 국가는 2개국이다.⁵⁹⁾

대략적으로 유엔 회원국 중의 2/3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없고, 1/3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성애 처벌하는 국가의 수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의 수보다 많다. 이러한 유엔 회원국 분포로 인

57) Anti-discrimination (sexual orientation), NationMaster, <http://www.nationmaster.com/country-info/stats/Culture/Sexuality/Homosexuality/Anti-discrimination-laws>. 65개국 중에서 Kosovo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며, 일본과 필리핀은 차별금지법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차별금지법 있는 국가 명단) Albania, Andorra, Austria, Belarus, Belgium,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ulgaria, Canada, Cabo Verde, Chile,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cuador, El Salvador, Estonia, Fiji,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Greece, Guatemala,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Mauritius, Mexico, Montenegro, Mozambique,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orway, Peru, Poland, Portugal,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erbia, Seychelles, Slovakia,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weden, Switzerland,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Venezuela

58) 73 countries where homosexuality is illegal, <https://76crimes.com/76-countries-where-homosexuality-is-illegal/> 73개국 중에서 Cook Islands는 유엔 회원국이 아님.

(동성애 처벌법이 있는 국가) Afghanistan, Algeria, Antigua & Barbuda, Bangladesh, Barbados, Bhutan, Botswana, Brunei, Burundi, Cameroon, Chad, Comoros, Dominica, Egypt, Eritrea, Eswatini, Ethiopia, Gambia, Ghana, Grenada, Guinea, Guyana, Indonesia, Iran, Iraq, Jamaica, Kenya, Kiribati, Kuwait, Lebanon, Liberia, Libya, Malawi, Malaysia, Maldives, Mauritania, Mauritius, Morocco, Myanmar, Namibia, Nigeria, Oman, Pakistan, Palestine/Gaza Strip, Papua New Guinea, Qatar, Samoa, Saudi Arabia, Senegal, Sierra Leone, Singapore,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Sudan, Sri Lanka, St Kitts & Nevis, St Lucia, St Vincent & the Grenadines, Sudan, Syria, Tanzania, Togo, Tonga, Tunisia, Turkmenistan, Tuvalu,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zbekistan, Yemen, Zambia, Zimbabwe

59) Botswana는 형법에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성교를 한 사람들을 벌하는 조항들이 있으면서, 2010 고용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https://www.globalegalinsights.com/practice-areas/employment-and-labour-laws-and-regulations/botswana#chaptercontent3>). Mauritius는 형법에 소도미와 수간을 한 자를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2008년 기화균등법에 따르면 성적지향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하여,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을 명시한 유엔조약은 전혀 없으며, 유엔조약들을 공정하게 해석하면, 이 개념을 내포하는 조약은 하나도 없다.⁶⁰⁾

국제인권규약인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성적 지향’이 명문으로 들어 있지 않으며, 차별금지사유로 성(sex)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법은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개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⁶¹⁾ 따라서 이러한 분포를 갖고 있는 유엔은 동성에 옹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유엔이 동성에 차별금지를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엔 총회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산하의 소위원회가 동성애 옹호 결정을 함으로써, 유엔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 예로서, 유엔인권위원회는 1994년 “성”에 의한 차별 금지에 “성정체성”이 포함된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다.⁶²⁾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은 규약 가입국의 의사와 정면 배치되고, 규약의 비준시 이루어진 한국 국회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기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 1990년 제13대 국회 제148회 제3차 외무통일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는 규약이 “남녀평등권을 규정하고”라고 설명했으며, 첨부한 참고자료에도 “3.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제2-19조)… 남녀평등…”으로 되어 있을 뿐 회의록 어디에도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규약 상 “성”에 의한 차별 금지를 “남녀평등”으로만 해석하였고, 국회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규약의 평등권 조항을 동의한 것이다.⁶³⁾

사회권위원회가 2009년 제42차 회기에서 채택하여 2009년 7월에 배포

한 “일반논평20: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E/C.12/GC/20)에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의 “기타의 신분”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2009년 제64차 유엔총회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일반논평20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국제인권조약에 관한 결의안>(A/RES/64/152)을 찬성 76, 반대 72, 기권 26으로 채택하였다.⁶⁴⁾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의 다수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 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자연적인(natural)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을 국가와 사회공동체는 보호해야 한다.”는 결의를 두 차례 하였다. 가족보호 결의에 대해 2014년에는 찬성 26, 반대 14, 기권 6이었고, 2015년에 찬성 29, 반대 14, 기권 4이었다. 이 결의안을 채택할 때에 가족의 개념에 다양한 가족, 즉 LGBT를 포함하려는 수정 결의안은 부결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결혼

60)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t the United Nations, Factsheet, Center for Family and Human Rights, 2015.11.10.

6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sex),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62) Paragraph 8.7, Toonen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488/1992, U.N. Doc CCPR/C/50/D/488/1992 (1994).

63) 출처: <http://likrms.assembly.go.kr/record/mhs-60-010.do#none>

64) 일반논평 20 환영 삭제 결의안 A/64/PV.65, A/RES/64/152, <https://www.un.org/en/ga/64/resolutions.shtml> (18 Dec. 2009).

65) Human Rights Council(HRC) resolution – Protection of the family, A/HRC/RES/26/11 (adopted Jun. 26, 2014); HRC resolution – Protection of the family: contribution of the family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its members, particularly through its role in poverty eradication and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HRC/29/L.25(adopted Jul. 1, 2015)

의 정의를 지켰다.⁶⁶⁾

유엔인권이사회는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법과 관례, 폭력행위 금지'를 3번 결의하였는데, 2011년에 찬성 23, 반대 19, 기권 3, 2014년에 찬성 25, 반대 14, 기권 7, 2016년에 찬성 23, 반대 18, 기권 6이었다.⁶⁷⁾ 이렇게 성적지향 차별금지 결의에 찬성이 많은 이유는 유엔인권이사회 내에는 동성에 옹호 국가가 동성에 반대 국가보다 많기 때문이다. 유엔 전체로 보면, 동성에 반대 국가가 동성에 옹호 국가보다 많지만, 유엔인권이사회 내에서는 오히려 적은 분포를 가진다. 이러한 왜곡된 분포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는 유엔 전체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성애자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정신에 입각하여 성적지향 차별금지에 동의한 국가들도 있었지만,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법제화할 때에 동성에 반대 활동이 처벌받는 사례를 보면서, 동성에 차별금지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졌던 국가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예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결의를 할 때에 중국이 최근에 '기권'에서 '반대'로 입장을 바꾸었다.

결론적으로 유엔이 동성에 차별금지를 지지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위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를 삭제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엔 회원국의 2/3을 차지하는 다수 국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4 “평등과 차별금지”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는 경우 제한되어야 하는 것은 자유이지 평등이 아니다.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평등에서 배제하는 것은 배제된 이의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다.

※ 이러한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그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반론해 본다.

1) 상향식 평등

평등은 하향식 평등을 추구하거나 불법 또는 부도덕으로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은 상향식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상향식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만 진정한 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최대한의 자유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의 요청이다.

66)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its twenty-sixth session, A/HRC/26/2.

67) Human Rights Council(HRC) resolution –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17/19 (adopted Jun. 17, 2011); HRC resolution – Human rights,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HRC/RES/27/32(adopted Sep. 26, 2014); HRC resolution, Thirty-second session, A/HRC/RES/32/2 (adopted by the HRC on Jun, 30, 2016)

2)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것이다. 다음 세대를 출산 양육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복수의 성을 전제로 하는 동성애, 양성애, 범성애와 같은 가치로 취급을 받을 수 없으며, 같지 않은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에 반한다. 더욱이 현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5 성적지향 삭제가 ‘성소수자 인권을 빼앗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명시한 결과, 과연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으며, 과연 누구의 권리와 이익이 더 침해되고 있는가를 판단해보라.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한다고 해서, 성소수자의 인권이 박탈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 양성애, 심지어 간통행위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군대내 동성애 행위에 대해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을 뿐인데, 이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데에 따른 부득이한 선택이다.

6 그 밖의 주장에 대한 반론

동성애 옹호자의 주장

-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근거 없는 일부 기독교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마주하게 될 차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
- 우리는 누구라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모습 그대로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안다.

1) 동성애와 에이즈 감염 상관관계

에이즈 감염 경로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다.

최근에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이 거의 100% 성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에이즈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323쪽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주요 전파경로일 것으로 판단됨”, 327쪽에 “동성간 성접촉이 주된 전파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HIV/AIDS의 초기 확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분명하게 국내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는 남성간 성접촉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도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도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기술되어 있다. 이것은 기독교계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2)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질환으로서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서 동성애에 대한 경고를 지속하면서 동성애자의 치유 내지 회복을 돕는 것과 “네 마음대로 하라”고 방임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판단해 보라.

인권위법 제2조는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지,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예시된 “성적지향”이, 정당한 혐오를 금지하고 동성애 독재, 전체주의로 확대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3)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구별이 필요함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혐오’와 ‘동성애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구별하고 있다. 즉 동성애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 동성애 옹호자들은 행위와 행위자를 혼동하게 만들려고 한다. 예로서, 흡연자의 인권은 보장하더라도 담배 자체에 대한 비판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장하더라도, 동성애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다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이다. 개인적인 윤리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동성애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틀린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혐오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강요하려는 것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난다.

■ 추가: 인권위법 개정안의 ‘성별의 정의는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을 인권위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한국의 법체계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함

① 헌법재판소의 판례

“헌법 제11조 제1항은…’성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성별은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생래적인 특징으로서” (2006헌마328)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의 평등대우를 명하고 있으므로 남녀의 성을 근거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001헌가9)

②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도 호적법을 포함하여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⁶⁸⁾

③ 현행 민법 등에서도 성별을 남과 여로 구별함을 전제로 양성(兩性), 부부(夫婦),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 부모(父母)라는 성구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의 한국 법체계는 '성별'을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sex)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인권위법 개정안은 과연 성 소수자들을 인권위법 적용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가? 트랜스젠더 등의 성 소수자는 존재가 부정되는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헌법상 권리와 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따름이다. 현행 인권법상 성적 지향을 명문으로 두지 않더라도, 트랜스젠더의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인권위 적용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지 주장이다.

현행법상 대법원규칙(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술을 통해 신체적으로 성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 성별이 변경되므로 이를 통하여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3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의 삭제 당위성

발의된 개정안은 성별 정정이 어렵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성별정정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니다. 개정안도 수술 등을 통해 신체적으로 성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성을 결정함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성은 남자 또는 여자 중 어느 하나로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대법원 2004스42 전합).

3) 개정안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별 정의를 남성 또는 여성으로 축소하는 것이 다양한 성차별을 지우는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남성 또는 여성 외의 '제3의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양한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양성평등"을 파괴하고, 제3의성이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별에 대한 정의를 남녀로 한정하는 것은 성별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양성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개정안이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는 것이 간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간성은 제3의성이거나 정상적인 성의 한 종류로 보기 어려우며 아주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성기 기형이라고 봐야 한

68)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다.⁶⁹⁾ 간성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술을 통하여 남성 또는 여성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제3의성을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간성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다.

3) 성별에 '제3의 성'을 포함하면 나타나는 문제점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⁷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공립학교 3학년(8세)때 자신의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동성결혼은 정상인 것으로 배우고,⁷¹⁾ 건강보험카드의 성별 표시가 삭제되었고, 운전면허증의 성별을 'X'로 표기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⁷²⁾

영국에서 2009년~2010년 사이에 남녀 아동 총 97명이 성전환 시술을 원했었는데, 2017년~2018년 사이에는 그 수가 총 2,519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⁷³⁾

2016년 오바마대통령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성적체성에 따라 화장실, 락커룸을 사용하도록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촉발된 화장실 전쟁은 일반학생 대 트랜스젠더학생간의 소송전이 되었고, 트럼프대통령이 취임 후 이 명령을 폐지했음에도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⁷⁴⁾

남성으로 태어나 직업 군인으로 근무하였던 펠론 팩스는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여성 격투기 선수가 되었고, 2014년에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하여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다.⁷⁵⁾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 선수가 여성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트랜스젠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복싱이나 유도와 같이 신체 상해의 위험성이 큰 경기에서 여성 선수의 안전이 위험해 질뿐만 아니라, 경기의 공정성도 문제된다.⁷⁶⁾

남녀 성별 구분이 사라지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 등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결국 화장실 등의 여성전용공간에서 성폭력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한국에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69) 국민일보, 2019년 11월 26일, <https://bit.ly/2R6b6FV>

70) Lifesite News, 2016년 5월 27일자, <https://www.lifesitenews.com/news/29-new-words-for-deviance-you-can-be-fined-250000-for-not-using-in-nyc>

71) Ontario's Radical Sex Ed Curriculum, Campaign Life Coalition, <https://bit.ly/2L9w7eS>; 2015 The Ontario Curriculum Grades 1-8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124쪽, 231쪽, <http://www.edu.gov.on.ca/eng/curriculum/elementary/health1to8.pdf>

72) GMW, 2016년 7월 26일, <https://bit.ly/2OXHF7T>

73) 글로벌뉴스픽, CREDO 매거진 2호, 9 페이지 (2018년 12월).

74) 그래픽뉴스, CREDO 매거진 Issue 3(2019년 2월), 30~31 페이지.

75) CGN투데이, 2019.2.14.

76) 위의 글.

